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4
----------	------

제출연월일: 2020. 2. 7.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
- 나.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안 3조)
- 다.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으로 출산양육지원 확대와 출산양육지원금의 계획 수립(안 제4조)
- 라. 지원신청서 제출 기한 “6개월”을 “1년”으로 변경(안 제5조)
- 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변경

3. 근거법규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나.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의견 반영(별지 제3호서식에 ‘성별’란 추가 기재)
- 라. 입법예고: 2020. 1. 13. ~ 2. 3.(21일간)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로,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출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을 “출산을 장려하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생아”를 “영아”로, “울산광역시중구”를 “울산광역시 중구”로, “부모로”를 “부 또는 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를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 외의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둘째아이 이상부터 1명당 100만원 이하를”을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 신청서”를 “지원 신청서”로, “첨부 하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부.”를 각각 “1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을 “매달”로 한다.

14 (제221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제7조제1항 중 “환수 하여야”를 “환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 하여야”를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 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1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첫째아이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 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이름 :) [] 둘째 자녀(이름 :) [] 셋째 자녀 이상(이름 :)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출생아의 (부/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종별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에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2. 복수국적 여부 : [] 에 [] 아니오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으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수 읍·면·동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u>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u></p> <p>2. (생 략)</p> <p>3. <u>“출산양육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u>신생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u></p>	<p><u>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 출산-----</u></p> <p>제2조(정의) ----- ----- <u><삭 제></u></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 <u>출산을 장려하기 -----</u></p> <p>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 <u>영아--</u> ----- <u>울산광역시 중구-----</u> ----- <u>부 또는</u> <u>모로 하며, 영아와 주민등록상</u></p>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으로 인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는 1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지원기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이 이상부터 1명당 1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입양자녀 포함)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한다.

같은 세대여야 -----
--.

② -----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 외의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

③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자가 영아의 출산 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첫째아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

-----.

<신 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신청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 1.신청서 1부.
- 2.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출산양육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
-- 지원 신청 시 -----
----- 첨부하여야 ----.

- 1.---- 1부
- 2.----- 1부

③ -----

----- 1년

-----.

제6조(지원절차) ① (생략)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자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매달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조치) ① -----

----- 환수하여야 -----.

② -----

----- 기재하여야 -----.

제8조(대장 등 비치)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관리하여야 -----.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출산장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기준)

2. 비용추계의 전제

- 출산양육 지원금 기준

- 첫째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액(2020년 이후) : 1인당 500천원
- 둘째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셋째 자녀 이상 출산양육 지원금액 : 1인당 2,000천원
-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중복지원 불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지출	출산양육 지원금	979	835	712	607	517	3,650
	소계(a)	979	835	712	607	517	3,650
수입	보조금	404	346	295	253	216	1,514
	소계(b)	404	346	295	253	216	1,514
총비용(a-b)		575	489	417	354	301	2,136
출산아동수		1,164명	989명	841명	715명	608명	4,317명

※ 출산아동수는 추계(동행정복지센터 자료 참고)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비	보조금	9	9	9	9	9	45
	특별보조금	0	0	0	0	0	0
시비		395	337	286	244	207	1,469
기금		0	0	0	0	0	0
구비		575	489	417	354	301	2,136
기타		0	0	0	0	0	0
합계		979	835	712	607	517	3,650

※ 국·시비는 여성가족부 및 울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원예산 적용

1. 부대의견 : 없음
2. 협의사항 : 출산양육지원금 예산편성, 예산담당과 협의
3. 작 성 자 : 여성가족과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수기(290-4902)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비	9	9	9	9	9	45
시비	395	337	286	244	207	1,469
구비	575	489	417	354	301	2,136
합계	979	835	712	607	517	3,650

2. 재원조달방안

- 첫째아 출산양육 지원금 : 울산광역시 내시에 따름, 자체재원
(시 100천원, 자체재원 400천원)
- 둘째, 셋째 자녀이상 출산양육 지원금 : 울산광역시 내시에 따름
(시 50%, 구 50%)
-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금 : 여성가족부 내시에 따름
(국 70%, 시 15%, 구 15%)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출산양육지원금 예산편성, 예산담당과 협의

5. 작성자 : 여성가족과 지방사회복지주사 이수기(290-4902)